

'99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1998. 12. 15.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1) '99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 -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 -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- 2) '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장(안)
 -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5일
 -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5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55회 정기회

- 1) '99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 -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(1998. 11. 5) 상정, 유보
 - 제155회 정기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(1998. 12.15) 상정, 의결
- 2) '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(안)
 - 제155회 정기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(1998. 12.15) 상정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박경국)

가. '99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1) 제안 이유

-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1958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부, 분수계약 체결 관리 하여온 분수국유림에 대하여

- 산림청에서 '98년도부터 년차별로 수익분배하는 입목대금 전액으로 도유림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) 주요 골자

[재산의 취득]

- 도유임야 매입 -

- 위 치 : 미선정 (충주, 제천, 괴산, 단양군 등 기존도유림 인근의 사유임야를 매입 집단화)
- 규 모 : 총면적 933ha, '99년도 매입 45ha (추정)
- 시 기 : '99상반기
- 취득가액 : 총 8,400,000천원(추정) '99년도 400,000천원

나. '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(안)

1) 제안 이유

- 1998. 11. 5 제154회 임시회의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임야취득)(안)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사전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사항 미비로 유보된 바 있어 매입대상 임야를 19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수정(안) (7-2)호와 같이 선정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) 주요 골자

[재산의 취득]

- 도유임야 매입 -

-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(안)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(7-1) 및 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의 수량 450,000㎡, 금액 400,000천원을 수량 1,079,787㎡(8필지)중에서 금액 390,000천원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함.

- 위 치 : 재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49-1 외 7필 중 390,000천원
범위내에서 매입하고자 함.
- 재산의 표시 및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, 추정가액 등은 별지와 같음.
- 규 모 : 총면적 933ha, '99년도 매입 50ha (추정)
- 시 기 : '99상반기
- 취득가액 : 총 8,400,000천원, '99년도 390,000천원(추정)
- ※ 임야매입 후 필지별 매입현황 보고계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정 노 환)

가. '99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 '99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, 충주, 제천, 괴산, 단양군 등 기존 도유림 인근의 사유 임야를 매입하려는 계획인 바, 도비를 투자함에 있어 구체적인 위치, 지번별 매입 가격 등을 명기하여 의결을 요청함이 타당하고 또한 지방재정이 어려운 '99년도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나. '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(안)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,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사항 미비로 유보한 계획인 바, 재산의 표시 및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, 추정가액 등을 명기하여 도유림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 요 지: “생략”
6. 심사 결과: “수정안 가결”
7. 소수의견 요 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별첨

◎ '99 공유재산관리계획서(안)